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44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0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 사무명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출연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출연 근거 규정이 있는 법정 출연금
-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출연 사무 내용

- 1)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 2)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 1)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3층)
- 3) 규 모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

구 분	정·현원	인원수	세부 내용
조합위원	정원	20인	사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현원	20인	사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사무직원	정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현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직원(2인)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 108.9㎡(33평, 임차 사무실)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21년 출연금 편성액(안) : 201,489,050천원

※ 2020년 출연금 편성액에 준한 잠정액으로서 지방소비세 추계에 의해 변동 가능

2) 2021년 산출근거(안)

- 575,683,000천원(중앙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35%

※ 중앙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인상 10%분(약 8.7조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약 4.5조원)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에 서울시 안분율 (13.646%) 적용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배경과 운영 현황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심화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발전 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10.7.24)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음(제17조)<sup>1)</sup>.
-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으로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sup>2)</sup>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5%(2010)에서 시작해 11%(2014), 15%(2019), 21%(2020)로 상향되었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

-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 지방채·공사채의 인수, ▶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 지방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기금고갈 우려로 기금계정을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나누어 배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보전을 목적으로 ‘전환사업보전 계정’을 신설하였음.

### < 기금 용도별 계정 현황 >

구 분	재 원	도입	세부내용	배분
재정지원계정	출연금 50%	2010년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 사업 재정지원	재정여건 등
용자관리계정	출연금 50%	2015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용자지원	
전환사업보전 계정	지방소비세 3.6조	2020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보전	국가 균특회계 이양사업 규모

- 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sup>3)</sup>에 따라 기금의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되었음.
-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2,492억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1조 9,703억원을 출연하고, 1,626억원(재정지원 1,139억원, 용자지원 487억원)을 배분받았음.

3)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국세(7) 대 지방세(3) 비율 개선 등을 추진함.

## < 서울시의 기금 출연 및 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연	19,703	1,497	1,627	1,644	1,681	1,745	1,675	1,755	1,967	2,000	2,097	2,015
재정지원	1,139	107	119	135	143	147	73	77	82	88	90*	78
용자지원	487	-	-	-	-	-	73	77	82	88	89	78
전환사업 보전*	280	-	-	-	-	-	-	-	-	-	-	280

\* 2019년 재정배분액 90억원 : 지자체 공무원 조합 사무국 파견 인센티브 1억원 포함

\* 전환사업 보전 : 2020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분에 대한 재정지원(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 다.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

- 2021년도 기금 출연금은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 (5,756억 8천 3백만원)<sup>4)</sup>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천 9백만원임 (2020년 출연금 편성액에 준한 잠정액).

- 최근 3년간 출연금은 2018년 2,000억 1천 5백만원, 2019년 2,097억 2천 1백만원, 2020년 2,014억 8천 9백만원임.

### < 기금 출연금 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	균특회계 사업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서울시 안분율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8.7조원		3.6조원		0.9조원		13.646%		5,757억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서울시 안분액은 2020년도 부가가치세 87조 1,869억 6,200만원 중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11%→21%) 8조 7,186억 9,600만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 보전 비용 3조 5,680억 6,230만원과 자치구·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9,000억원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에 서울시 안분율(13.646%)을 적용하여 산출함.

-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기금의 유지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기금의 조성 당시부터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sup>5)</sup>와 배분시 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기금 출연기한을 10년 더 연장한 만큼 수도권의 일방적인 출연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는 1조 9,703억원, 인천시는 3,985억원, 경기도는 1조 8,804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나, 재정 지원은 각각 1,139억원, 840억원, 1,149억원에 불과해 안분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 기여와 지역수요 반영 정도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5)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로 조성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 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음.